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나. 의안번호 : 제148호
 다.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 안 이 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심의제를 도입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가. 시와 자치구간 지역정보화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화 공동개발단"의 명칭을 "정보화정책회의"로 변경하고 기능을 정비함 (안 제7조)
 나. 실무형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정보화기획단장으로 변경하고 정보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 (안 제10조)
 다. 간단한 심의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E-Mail,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등)을 이용한 원격심의방식을 적용하고자 전자심의제(On-Line)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4. 검 토 의 견
 《총괄부문》
 ○ 본 조례안은 1995년 8월과 12월에 제정 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같은 법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서울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관한 "다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
 ○ 또한, 본 조례는 정보화촉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시행,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보화 자료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에 근거,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실무형 위원회의 재구성과 시·구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정책회의"구성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세부사항》
 ○ 안 제7조(정보화정책회의)
  - 본 조례에 의거 구성되어 있는「정보화공동개발단」의 운영기능을「시·구 정보화정책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 기능을 정비하여 지역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은 타당함.
 ○ 안 제10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실무형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정보화기획단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행정전반에 대한 정보화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행정에 경험이 많은 위원장 선임이 바람직함.
  - 정보화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이 없어 신기술을 습득한 위원영입이 곤란하였던 것을 외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은 타당함.
  - 제10조제3항3호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삭제되어 향후 정보화추진위원회에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었으나 서울시 산하의 각종 행정위원회는 본래의미인 합의제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가 아닌 법령·조례에 근거한 자문

기구가 대부분으로 입법기관인 시의회의원이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곤란함. 물론 참여할 경우 집행부의 정보와 업무에 능동적으로 의회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회의 위상, 현행 자치제도의 견제균형의 대립적 구조, 일부 의원만 참여시 타의원 정보차단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행정 위원회(자문기구)에 시의회 의원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회의 등)

- 심의자료를 E-Mail로 송부하고 E-Mail로 회신을 받는 원격심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전자심의제(On-Line심의제) 도입하고 있으나
- 심의전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안이나,
- 위원회 성격상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나머지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봄.

5. 참 고 사 항

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003. 1.15)

○ 조직제도담당관 의견 : 위원교체 및 위원장 하향조정을 통한 활성화 조치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심의"라 함은 회의 개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보화정책회의)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회의는 당해 정보화 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장 1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중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를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